

고
시
제
二
조
六
호

보
안
리
제
제
의
기

4
0
리
2
리

索引
第 4 號

해제
사무보안림



미 완 결	전 년 분	관 련	완
	기 입 세	호	종 결

현지를 조사하든바
재무국장으로부터
의뢰한본건
본임지는

전명보안림
(클립의안)
해제의건

부시
장
91.11.28
홍우

시
장

국
장

관인국장
12.9

홍우
과
장

문서계
기
안
자

안 입	수 접
단기 12월 1일	단기 년 월 일
재	결

시

12.9
합교
회
장기

총
발
서
정
회
호
번
계
관

시
행
장
주
의

경사가 이완하고 전혀 무림보거지이며
 나민정착기 개방지여기의 일부이므로 알

으로 임지로 조치성이었사오나 다음과 같은
 이보안림 해제 시행하오리가 재

결을 앙청하나이라

기

성부	구	노재	지
미아	도	보안림	보안림
투척	종류	리	변
-사	-	지	무
암야	면	보안림	적
보안림	적	변	해
-삼	-	적	제
사유	별	노우	우
성윤	사	노우	자
대리	사	해	제
중	우	제	
	비		
	고		

안 =

(교시아)

서울특구별시교시제 = 5호

삼림령 제 3조 및 동령 시행규칙

제 9 조 의 구 경 에 의 하 여 보 안 립
을 나 음 과 같 이 해 제 한 다

관 기 12 = 9 - 1 년 일 일

서울특구별시교시제

나 음

주 "품의안 죄기 이기할것

안
三

내무국장

알

산업국장

보안림해제에 관한 건

보
건
별지와의같이
고시되었으니
시

보
에
계재하여
주심을
행망하
나이다

주별리는
무사안
좌가
이기할것

하
12

각주장

알

부시장

50 건

본건 별지와 같이 고시되었으나 양

지하시압

주' 별지는 고시안 되기 이기할 것

안
5

각 구 청 장

일

부 시 장

동 거

복 거

별 지 와 같 이 교 시 회 영 으 나 일 반

에 게 주 지 게 하 시 압

주 변 지 는 교 시 안 리 가 이 기 할 것

안
능

노령부 장관

말

시 장

도 건

부 건 조 치 할 필 용 가 어 는 보 안 립 은

별 지 와 가 이 해 제 하 었 사 입 기 이 에 보 고
이 나 이 라

주 시 행 할 때 고 시 안 과 기 뜻 입 야 도 첨 부 할 것

안
나

재무
구장

알

산
업
구장

시
유
지
관
리
에
관
한
건

대 (日 回 = 九 - 一 年 - 二 月 一 日 發 行)
사재관제 日 回 九 一 年 二 月 一 日 發 行 號)

대
호
건
별
지
와
같
이
보
안
림
해
제
하
역
사
삽
기
이
에
회
보
하
나
이
나

주
별
리
는

고
시
안
이
기
를
것

參考

關係法之拾遺十

市林林令之

第三條

表林部長官之公堂上申受請出之認定並將又之保安
林之立請出之存置認定必和女加請出之認定並將之保安林

之解除認定予以出

森林令之以規則

第一條

左ノ各ノ事ノ用該事項之地方長官イリニ外該事項出

但該事項認定請出有市森林令付請出之例アリ該出

一而請出可也該出超過請出アリ該出有市森林令付請出アリ

右市森林令付請出第一條 第七條ニ市森林令付請出アリ

二市森林令付請出有市森林令付請出之額ニ4圓以下ノ以該出該出

三而該出之額ニ超過請出アリ該出有市森林令付請出

曰、五種林之第一條、第二條乃至第五條、第九條之外、分

地方官の^ニ而、次の^ル分^を之^レ以^テ、明の^ニ以^テ、勅を^シ請^フル

註、

第九條

保安林の編入^ニ由^リ、解除^シ之^ル地^域、之を^シ請^フル^ル地方官庁の

公布^スル^ルに依^リ、請叫^ル地^方官^庁の^ニ由^リ、勅を^シ請^フル^ル註、

보안림해제조사서

단기四二九 一 年 一 月 二 〇 日 조사
 조사원 삼림조사 박우병

소재지		서울특별시 삼성동구 미아동 산 1-1 임야	
소유자		서울특별시 구 동 번지 서울특별시	
보안림종류		풍치보안림	
보안림면적(㎡)		단기四二九 一 年 七 月 一 八 日 고시제 10호	
면적	현보안림	50정	3단 6묘 / 보
	요해제지	경 8단 3묘 / 보	
적산지		39정	5단 3묘 / 보

요해제지	요해제지
의현황	의현황
요해제지	<p>1. 지황. 방향. 동향. 토질. 사질 경사. 10도</p> <p>2. 임황. 무덤목 1지 임</p>
요해제지	<p>내지 조성. 고지. 향에 해제. 큰 오향</p>